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

(의견수렴안)

## 제 1 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하 ‘외국인투자법’으로 약칭)의 효율적인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관련 정책 조치를 완비하고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법에 의거한 중국 내 투자를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자는 법에 의거하여 단독으로 또는 중국의 자연인을 포함한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내에 투자할 수 있다.

**제4조** 외국인투자법 제 2 조 제 2 항 제(3)호에서 중국내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 특정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지도 아니하고 중국 내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 지분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지도 아니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 등기·등록 업무는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인민정부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담당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작성하며 국무원이 발표하거나 발표를 승인한다.

국가는 대외개방 확대 수요에 따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시적으로 조정한다.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조정 절차는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국가는 법률·법규 및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협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8조** 국원 상무주관부서, 투자주관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는 직책·업무분장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유관부서가 법률·법규와 직책·업무분장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독촉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를 지체없이 조율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 제 2 장 투자 촉진

**제9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의 자금 배정, 토지 공급, 세금 감면, 자격 허가, 프로젝트 신고, 직함(職稱) 평정, 인력자원 등 기업 성장 지원 정책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기업을 평등하게 대하여야 하며 차별적인 정책 조치를 제정하거나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업 성장 지원 정책 조치는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정책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기업의 신청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평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법규, 규장, 규범성 문건의 초안을 기안함에 있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서면 의견 수렴, 간담회·논증회 개최 등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상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대 권리·의무와 연관된 문제에 관한 의견은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 채택 상황을 피드백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관련 규범성 문건은 정부 공보,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법에 따라 적시에 공포하여야 한다. 공포되지 아니한 규범성 문건을 외국인투자 관리 실시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주도, 다방면 참여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투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전국 일체화 온라인 정부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법규, 규장, 규범성 문건, 정책 조치와 투자 프로젝트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하여 홍보·해설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자문·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법 제 13 조에서 특수 경제구역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 대외개방 확대를 목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거쳐 출범된 구역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인 정책 조치를 시행하는 특정 구역을 지칭한다.

국가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외국인투자 실험성 정책 조치는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경우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그 시행 범위를 기타 지역 또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

**제13조**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정 업종·분야·지역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권장형 산업 목록을 제정한다. 외국인투자 권장형 산업 목록은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등 유관부서 및 유관 지방 인민정부와 회동하여 제정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발표하고 시행한다.

전항에 규정한 특정 업종·분야·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재정, 조세, 금융, 토지 사용 등 방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투자자가 그의 중국 내 투자수익으로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혜택을 누린다.

**제1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및 단체표준의 제정 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며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불법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무원 표준화행정주관부서에 강제성 국가표준 입안(立項)을 건의할 수 있으며 표준 초안 기안, 기술심사 및 표준 실시 등 과정에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제표준의 외국어 번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이 공개한 표준의 기술 요구가 강제성 표준의 관련 기술 요구보다 엄격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유관부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강제성 표준보다 엄격한 기술 요구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추천성 표준 또는 단체표준의 적용을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그 어떠한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지역 및 본 업종의 정부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조달감독관리부서, 구매자 또는 구매대리기구는 정부조달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공평한 경쟁을 통하여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정부조달 정보 공포, 공급원 조건 확정, 자격 심사, 평가심사 기준 등 면에서 공급원의 소유제 형태, 조직형태, 지분구조 또는 투자자의 국적 등에

대한 불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정부조달감독관리부서는 내자기업(內資企業)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정부조달 참여에 관한 지도와 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중국 내 또는 해외에서 주식·회사채 공개발행, 기타 용자수단의 공개적·비공개적 발행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타 방식으로 용자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용자하는 경우 유관 주관부서, 금융기관은 내자(內資)와 일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외채를 빌릴 수 있다.

**제20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과 외국인투자 촉진의 수요에 따라 법정(法定) 권한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 및 원활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 및 원활화를 위한 정책 조치를 제정함에 있어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질적 성장 촉진을 지향하고 경제적 효익, 사회적 효익, 생태적 효익 증진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21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투자주관부서는 국무원 기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포괄적 외국인투자 지침을 작성한다. 국무원 유관 업계주관부서는 실제 수요에 따라 해당 업종·분야의 외국인투자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실제 수요와 본급 정부가 확정한 직책·업무분장에 따라 상응하는 외국인투자 지침을 작성한다.

외국인투자 지침은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법규, 정책 조치, 데이터 정보, 사무처리지침 및 투자환경 분석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지침은 정부부서의 웹사이트에 공포하여야 하며 적시에 갱신하여야 한다.

### 제 3 장 투자 보호

**제22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특수 상황에서 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징수 또는 징용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해당사유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법률 이외의 근거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

의 투자를 징수하거나 징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징수하거나 징용하는 경우 적시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이윤·자본수익·자산처분소득·지적재산권사용료, 합법적으로 취득한 보상금·배상금, 청산소득 등은 법에 의거하여 위안화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입금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불법으로 통화의 종류, 액수 및 입금·해외송금 빈도 등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국적 종업원의 급여소득 및 기타 합법적인 소득은 중국의 조세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법에 따라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4조** 국가는 지적재산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수립하고 지적재산권 신속 협동 보호 매커니즘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지적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 매커니즘 및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 구조 매커니즘을 완비하고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표준 제정 과정에서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특허와 연관된 경우 국가표준 연관 특허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은 등록·등기, 투자 프로젝트 허가·비안(備案), 행정허가를 처리하거나 감독검사·행정처벌·행정강제를 실시하거나 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기타 행위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비밀 포함 자료·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책 이행에 필수적인 범위로 한정하고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직책 이행과 무관한 공무원은 관련 자료·정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기관은 내부관리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직책 이행 중에 알게된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직책 이행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업비밀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기타 행정기관과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보에 포함된 상업비밀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외국인투자자와 연관된 규범성 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합법성 심사와 공평경쟁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행정행위의 근거로 인용된 국무원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 및 그 부서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법에 의거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해당 규범성 문건에 대한 심사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인투자법 제 25 조에서 정책 약속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적 조치, 편리 조건 등에 대한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의 승낙을 지칭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그의 법정(法定) 권한을 벗어난 정책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책 약속은 서면 형식을 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법률·법규의 규정과 국가의 관련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9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정책 약속과 법에 의거하여 체결한 제반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 이익·사회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 약속, 계약의 약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정구획 조정, 정부 지도부 교체, 기구 또는 직능 조정 및 관련 담당자 교체 등을 이유로 불법으로 계약을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외국인투자 불만신고 업무 매커니즘(이하 '불만신고 업무 매커니즘'으로 약칭)을 구축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로부터 보고받은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기타 중대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적시에 처리한다. 또한,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조치를 조율하고 보완하며 전국의 외국인투자 불만신고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수요에 따라 유관부서를 조직하여 불만신고 업무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해당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로부터 보고받은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며 해당 지역이 제정한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조치를 조율하고 보완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불만신고 업무 매커니즘을 주도하는 부서 또는 기구를 확정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지방 인민정부가 확정된 주도 부서 또는 기구가 불만신고 업무 매커니즘의 일상적 업무를 담당한다.

**제31조** 불만신고 업무 매커니즘은 효율성·편리성·원활성의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규

칙, 신고 채널을 완비하고 불만신고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불만신고 업무 매커니즘의 구성 및 주도 부서, 주요 직책, 업무처리규칙, 신고 채널 및 불만신고 지침은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불만신고 업무 매커니즘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로부터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유관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에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불만신고 업무 매커니즘을 통하여 문제를 보고하거나 문제의 조율과 해결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억제 또는 보복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불만신고 업무 매커니즘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보고한 대표적·보편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총결하여 적시에 본급 인민정부에 외국인투자 보호,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33조**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투기업은 자의에 의해 상회·협회 등 사회조직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이를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회·협회는 법률·법규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회원기업을 상대로 정보 자문, 홍보·교육, 시장 개척, 경제무역 교류, 권익 보호, 분쟁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는 상회·협회가 법률·법규 및 정관에 따라 관련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 4 장 투자 관리

**제34조**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수록된 투자 제한 분야에 투자함에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한 지분비율, 고급관리인원 등에 관한 제한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가 합명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수록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에 제한을 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합명계약에 약정한 외국인투자자의 표결권 비율이 네거티브 리스트의 지분비율 제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5조** 중국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그가 해외에 설립한 100% 지분보유 기업으로 중국 내에 투자하는 경우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한 관련 투자진입 특별관리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전항에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외국인투자자가 법에 따라 허가의 취득을 요하는 업종·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허가 실시를 담당하는 유관 주관부서는 내자(內資)와 일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허가신청을 심사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추가하거나 보다 엄격한 허가조건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심사절차, 심사자료를 증설하거나 기타 추가적인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유관 투자주관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심사비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심사비준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관련 조건과 요구에 부합되는 허가사항은 유관 규정에 따라 고지·승낙제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수록된 투자 제한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등기·등록 수속 처리 시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한 지분비율, 고급관리인원 등에 관한 제한적 요구사항 부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유관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관련 수속 처리 시 이미 심사가 이뤄진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심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유관 주관부서는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급 상무주관부서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38조**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 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투자 정보를 상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기타 방식 또는 경로를 통하여 투자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관련 업무처리 시스템 및 업무의 연결을 차질없이 진행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 정보 보고의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자 정보 보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9조** 외국인투자 정보 보고의 내용, 범위 및 보고 빈도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필요성 원칙,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 최대한 경감의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외국인투자 정보 보고의



내용, 범위 및 보고 빈도를 확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기타 관계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관부서는 직책 이행 중에 획득한 외국인투자 정보를 적시에 상무주관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부서간 정보 공유를 통하여 획득이 가능한 투자정보는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재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하는 투자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벽해야 한다.

상무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 정보 보관·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 정보는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실시하는 행정허가·행정처벌 등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 5 장 부칙

**제41조** 외국인투자법이 시행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약칭)으로 그의 조직형태·조직기구 등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등 법률의 강제성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외국인투자법 시행 후 5년 내에 법에 따라 변경 수속을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법 시행 후 5년 내에 법에 따라 변경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6개월 내에 법에 따라 변경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변경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해당 기업의 기타 등기사항의 처리를 보류하며 관련 상황을 기업정보 공시 시스템에 공시할 수 있다.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조직기구 등 변경 수속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변경 수속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 수속의 상세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2조** 외국인투자법 시행 후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합영·합자 당사자들이 계약에 약정한 수익배당 방법, 잔여재산 분배 방법 등은 합영·합자기한 내에 계속해서 약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가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제44조**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 특별행정구 투자자의 내륙지역 투자는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타이완(臺灣) 지역 투자자의 대륙지역 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臺灣) 동포 투자 보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臺灣) 동포 투자 보호법 실시세칙>(이하 '타이완 동포 보호법 및 그 실시세칙'으로 약칭)의 규정을 적용한다. 타이완(臺灣) 동포 보호법 및 그 실시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화교(華僑)의 중국 내 투자는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5조**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경영기한에 관한 잠정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의견수렴안)>에 관한 설명

(의견수렴안)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하 ‘외국인투자법’으로 약칭)이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법부는 당중앙·국무원의 결정을 관철·실행하고 외국인투자법의 효율적인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무부, 발전개혁위 등 부서와 회동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으로 약칭) 초안을 기안하였다.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 총체적인 입법 논리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법의 부대적 행정법규로서 의견수렴안 기안 시 이 포지셔닝에 입각하여 전면적으로 개방된 신 구도 형성 수요와 외국인투자법을 엄격히 관철·실행하는 원칙과 취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의 틀 안에서 법률 규정을 명확화·세분화하고 제도의 활용성을 증진하며 외국인투자법의 효율적인 실시를 보장함으로써 대외개방 진일보 확대, 외국인투자 적극 촉진,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외국인투자 관리 규범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장과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의견수렴안의 주요내용

의견수렴안은 5개의 장, 45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1)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 사항. 의견수렴안은 국가는 관련 정책 조치를 완비하고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외국인투자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법에 의거한 중국 내 투자를 격려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는 법에 의거하여 중국의 자연인과 공동으로 중국 내에 투자 가능, 외국인투자의 신규 건설 프로젝트 투자의 구체적인 의미, 외국인투자기업 등기·등록 업무 담당기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정·조정 절차, 국무원 유관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 협력, 외국인투자 촉진·보호·관리 업무의 공

동 수행,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외국인투자 촉진·보호·관리 업무에 대한 조직과 지도 강화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 1 장)

(2) **투자 촉진.**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자 의견수렴안은 다음 사항을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였다 : 국가의 제반 기업성장지원 정책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평등 적용;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법규·규장·규범성문건 제정 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상회 등 방면의 의견 청취; 외국인투자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완비;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정 업종·분야·지역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수익을 활용한 중국 내 투자 확대 권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표준 제정 사업 평등 참여, 강제성 표준 평등 적용, 정부조달 활동 평등 참여; 외국인투자 지침의 작성 등. (제 2 장)

(3) **투자 보호.** 의견수렴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음 규정을 담고 있다 : ① 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징수하거나 징용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해당사유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법률 이외의 근거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징수하거나 징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② 국가는 지적재산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수립하고 지적재산권 신속 협동 보호 매커니즘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지적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 매커니즘 및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 구조 매커니즘을 완비하고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행정수단을 이용한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고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은 직책 이행 중에 알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③ 외국인투자자와 연관된 규범성 문건 제정 시 합법성 심사와 공평경쟁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 약속, 계약의 약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정구획 조정, 정부 지도부 교체, 기구 또는 직능 조정 및 관련 담당자 교체 등을 이유로 불법으로 계약을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④ 외국인투자 불만신고 업무 매커니즘의 구축 및 그 직책, 운영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 3 장)

(4) **투자 관리.** 의견수렴안은 외국인투자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한 다음 규정을 담

고 있다 : ① 중국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그가 해외에 설립한 100% 지분보유 기업으로 중국 내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한 관련 투자진입 특별관리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②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수록된 투자 제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심사 매커니즘을 명확히 하였다. 시장감독 관리부서는 등기·등록 심사 시 외국인투자가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한 지분 비율, 고급관리인원 등 제한성 요구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유관 주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관련 수속 처리 시 이미 심사가 이뤄진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③ 외국인투자 정보 보고 규범화,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기업의 부담 최소화에 입각하여 외국인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한층 더 세분화하였다. (제 4 장)

**(5)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 등에 관한 과도기 설정.** 외국인투자법의 효율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외국인투자 정책 및 관리의 연속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법이 시행되기 전에 ‘외자 3 법(外資三法)’에 따라 설립된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조직기구 등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등 법률의 강제성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외국인투자법 시행 후 5 년 내에 법에 따라 변경 수속을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해당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변경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해당 기업의 기타 등기사항의 처리를 보류하며 관련 상황을 기업정보 공시 시스템에 공시할 수 있다.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합자 당사자들이 계약에 약정한 수익배당 방법, 잔여재산 분배 방법 등은 합병·합자기한 내에 계속해서 약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41 조, 제 42 조)

**(6)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관리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사안이고 다양한 상황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 조례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의견수렴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가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제 43 조)

**(7) 홍콩·마카오 투자자의 내륙지역 투자와 타이완 투자자의 대륙지역 투자의 법률**

**적용.** 홍콩·마카오·타이완 투자 관리 정책의 연속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견수렴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 투자자의 내륙지역 투자는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타이완(臺灣) 지역 투자자의 대륙지역 투자는 타이완 동포 보호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을 적용하며 타이완(臺灣) 동포 보호법 및 그 실시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 44 조)